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행동강령 시행의 성별(gender) 차원에 대한 권고사항

(아태 장애인 10년 1993-2002의 진보 평가를 위한 1995년 6월 26일-30일간의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 각국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행동강령을 이 모든 차이에 노력하는 한편, 이 행동강령이 성별 차이를 인식하여 만들어진다.

중요한 논제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은 지방, 도시를 막론한 모든 사회에서, 선진국에서 그리고 ESCAP지역에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3중의 차별을 경험한다. 여성인 것, 장애를 가진 것, 가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차별과 편견은 그러한 여성, 장애인, 빈민 각각의 집단 내부에도 널리 퍼져있다. 여성들 사이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은 열등하다고 여겨지며, 장애인들 사이에서 여성들은 그들과 평등한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여성은 가장 고립되어 있고, 주변화되어 있으며, 가장 가난하다.

그들은 보살핌과 먹을 것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기 쉽고 가족들간의 상호작용과 지역사회 활동들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들은 또한 의료와 재활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며 교육과 고용의 기회가 거의 없으며 결혼의 희망 또한 적다. 그들은 신체적, 심리적 학대에 보다 취약할 것이다.

장애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가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항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1993-2002년에 걸친 아태 장애인 10년이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를 구분해 놓았다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과, 지역·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의 행동강령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주어져야만 한다.

권고사항

1. 국가의 조정

전략적 목표:

그들과 관련된 국가적인 수준의 이슈들에 대한 정책과 의사결정에 관련하여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대표들이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

취해야 할 조치:

1.1 국가 조정 위원회의 구성원에 장애를 가진 여성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숫자는 위원회의 장애를 가진 남성들의 숫자와 동일하여야 한다.

*주력단체 : 장애에 관련된 국가 조정위원회
인간개발센터

1.2 위원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

다.

주력단체: 장애인들의 자치 단체, 인력개발과 여성들 내의 세력화에 관련된 조직

2. 입법

전략적 목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

취해야 할 조치

2.1 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차별하고 공공 서비스와 사회에 참여하는 접근권을 제한하는 현존하는 법과 정책들을 찾아내고 검토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주력단체: 정부, 장애인의 자치 조직

방 작성, 인력개발, 자치, 권력 (남성, 여성)

2.2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을 교육시키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강화하며, 또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포함하는) 대중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력단체: 정부, 장애인들의 자치 조직, 여성단체, 특히 법적인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관련된 단체.

2.3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무료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력단체: 정부, 법률 자문 단체

3. 정보와

주력단체: 정부, 장애인들의 자치 조직, 여성단체, 특히 법적인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관련된 단체.

4. 대중 의식교육

전략적 목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책수립과 조치에 바람직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대중의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급시키며, 대중해 보고, 촉진시키기

취해야 할 조치

3.1 국가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UN 체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애 상황에 대한 조사에 성별특정적 (성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역자주) 자료의 수집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주력단체: 정부, UNICEF, UNIFEM

3.2 도시지역과 지방에 사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 특히 가장 빈곤하고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 사는 여성들의 실제 생활 조건에 대한 연구를 그들의 생활 조건과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방법을 찾는 관점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주력단체: 정부, 장애인 자치 조직, 여성 단체, 지방의 경영과 주택권, 빈곤 완화를 담당하는 조직들

3.3 ESCAP 지역 내 개발 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경험을 녹음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주력단체 : 장애인 자치조직, 여성단체와 미디어 조직

3.4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자행되는 폭력의 종류와 정도를 그들을 보호하고 보상해 주기 위한 조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주력단체 : 정부, 장애인 자치조직, 여성단체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캠페인에 관련된 지역네트워크

4.1 ESCAP 지역 내 미디어 종사자들의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고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중들의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들의 지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주력단체 : 장애인 자치 조직, 주변화된 집단들의 사회적 움직임에 대해 힘쓰는 조직들, UNICEF, UNISCO, UNESCO 아시아 문화센터.

4.2 모든 활동들(스포츠, 예술)과 대중적 정보, 교육, 장애 이슈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자료(포스터, 기념 도장, 걸표지, 포장)에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력단체 : 정부, 장애인 자치조직, 미디어 조직

5. 접근성 과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해 추가된 권고사항 없음

6. 교육

전략적 목표

모든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완전히 가능한 교육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

취해야 할 조치

6.1 학교, 고등교육기관, 기능적 읽고 쓰기, 그리고 다른 비공식적 교육 프로그램에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의 등록이 저조한 이유를, 그들의 등록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시행하고 이끌어내기 위한 관점에서 연구하여야 한다.

주력단체 : 정부와 UNICEF

6.2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의 교육적인 욕구를 나타내기 위한 평가를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UNESCO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구체화시켜야 한다.

주력단체 : 정부, UNESCO, UNICEF와 UNDP, 기능적 읽고 쓰기의 증진에 관련된 비정부 조직

6.3 모든 교육과 읽고 쓰기 프로그램, 특히 일반의 소녀와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춘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주력단체 : 정부와 주변화된 집단들 내의 기능적 읽고 쓰기와 교육의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 조직들

6.4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의 교육과 기능적 읽고 쓰기에 대한 욕구를 모든 소녀들의 교육을 촉진하는 UNESCO의 모든 활동에 통합시켜야 한다.

—주력단체 : UNESCO와 UNESCO의 목적을 지지하는 비정부 조직

6.5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된 교육 모델의 교환을 지원하여야 한다.

—주력단체 : 정부, UNESCO와 UNICEF

6.6 관련된 국제적인 기관들에게 현재 ESCAP 지역내의 정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문 서비스를 통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을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소녀들의 동등한 접근권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게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주력단체 : UNESCO, UNICEF

7. 기술 훈련과 고용 : 청년층에게 기술 훈련을 제공함.

8. 장애 발생 위험의 예방

9. 재활 서비스 (건강과 사회적 발전)
에 대해 강화함

10. 보조 도구
에 대해 강화함

11. 자조 조직.
의식적 접근 부여. 동등 기회 제공.

12. 지역 협력.

정보 교류 (여성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술수장 효율성 강화.

↳ ESCAP 관련

목적: 2020년까지 세계 (최종 - 2020년까지 아동)

기술적 지원 기술적 지원 기술적 지원 기술적 지원 기술적 지원

기술적 지원 기술적 지원 기술적 지원 기술적 지원 기술적 지원

기술적 지원 - 기술적 지원 기술적 지원 기술적 지원 기술적 지원 기술적 지원